

참고 1

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

□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(제15조의2)

-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

□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(제16조의2)

- 안전요원의 자격기준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
-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

□ 「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」 (별표2)

구 분	점검항목	점검주기		점검결과
		권고	의무	
물이용 놀이 기구	○ 급배수 상태(물공급 노즐, 오버플로우, 배수구 등)	매일	월간	
	○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상태(베어링, 이중안전장치 등)	2주	월간	
	○ 미끄럼방지* 조치 상태(테잎, 매트 등)	1주	월간	
	○ 수질오염 상태(부유물질 등)	매일	월간	
	○ 기초부, 연결부 등의 물고임 및 부식 상태	매일	월간	

* 미끄러짐 방지(어린이제품안전인증기준 부속서)

- 물이용놀이기구에 사용되는 경사로의 경우 300mm 이내 간격으로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함

□ 「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」

- 안전수칙 및 최대수심이 표시된 안전표지판 설치
- 물공급 시설은 감전 사고에 안전한 별도장소(놀이구역 밖)에 설치
- 버킷은 추락방지를 위한 이중안전장치(체인, 와이어로프 등)를 하고, 장시간 미사용시 작동되지 않도록 조치
- 급수 및 배수장치의 유량은 설계시 유량 이하
- 공급용수의 토출압력은 설계 시 압력 이하
- 지정수위 이상의 물은 자연배수 되어야 함
- 배수구(오버플로우) 그물망의 메쉬(mesh)는 20mm 이하
- 배수장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
ex) 사방이 막힌 물놀이형 조합놀이기구 하부 등에 설치
- 물이용놀이기구의 활동공간 내 최대수심은 300mm 이하*
 - * 최대수심의 측정은 측정시 변형되지 않은 곧은 자를 사용하며, 안전표지판의 최대수심은 실제측정한 수심과 다를 경우 300mm 범위내에서 실제 측정한 최고수심으로 표시
- 배수로의 배수기능은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, 배수시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없어야 함

< 참고 >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(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제19의2)

검사기관 : 먹물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 의뢰

검사주기 : 가동 개시일 기준 운영기간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(가급적 이용자 많은날)

검사항목 : 수소이온농도, 탁도, 대장균, 유리잔류염소(염소소독하는 경우만)

관리기준 : 수심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, 침전물을 수시로 점검·제거
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 또는 여과기에 물을 1일 1회 이상 통과